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1002호 2018. 1. 1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공 고

-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공고 제1호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삼척시 공고 제34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삼척시 공고 제36호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공고 제2018-1호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삼척시장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레일바이크 시설 일부를 주변마을회 등에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소음·주차피해 등을 입고있는 주변마을의 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장의 제목 변경

- “시설의 위탁”을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으로 변경

나. 지역특산품 또는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 판매시설을 레일바이크 주변 마을회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해양관광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37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삼척시청 해양관광센터 삼척해양레일바이크
- 전 화 : 033-570-4602 / FAX : 033-576-0659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삼척해양레일바이크(전화: 033-570-4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시설의 위탁”을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으로 하고, 본 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및 주차 피해를 입고 있는 선로 주변마을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시설 또는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 판매시설을 레일바이크 시설 주변 마을회 등에게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변마을이라 함은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매원2리, 초곡1리, 초곡2리, 용화1리, 용화2리를 말한다.

제24조중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장 <u>시설의 위탁</u> | 제3장 <u>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u> |
| <신 설> | 제20조의2(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및 주차피해를 입고있는 선로 주변마을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시설 또는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 판매시설을 레일바이크 시설주변 마을회 등에게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변마을이라 함은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매원2리, 초곡1리, 초곡2리, 용화1리, 용화2리를 말한다. |

| 현행 | 개정안 |
|--|--|
| 제24조(준용) ① (생략) | 제24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
| ② 레일바이크 시설의 임대, <u>민간</u> <u>위탁</u> ,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 | ② ----- <u>민간</u> <u>위탁 또는 사용·수익</u> ----- ----- ----- -----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 제정안 | 검토의견 | |
|-----|------|------|
|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

삼척시 공고 제2018-34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01월08일

삼척시장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사용료의 단순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이해도 개선
- 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정기휴무일 신설로 캠핑장 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성수기' 기간 변경(안 제3조 5호)
 - '7, 8월중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7월과 8월로 변경
- 나. 정기휴무 조항 신설(안 제5조)
 -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명시(단, 성수기 제외)
- 다. 시설 사용료(별표 1) 중 카라반 사용인원 변경 및 신설(안 제7조 제1항)
 - '2~4인용'을 2인용(이용요금 변동 없음)
 - '4~5인용'을 4인용(이용요금 변동 없음)
 - '6인용' 신설(이용요금 :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해양관광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및 문의전화

- 주소 :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6, 해양관광센터(장호비치캠핑장)
- 문의전화 : 033-570-4390 (팩스033-576-088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7월, 8월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7월과 8월”로 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휴무)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화요일로 한다.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별표 제1호서식, 별표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사용료(제7조 제1항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1박)

| 시설별 | 사용기준 | 성수기 | 비수기 | | 동절기 | | |
|---------------|---------------|---------|---------|---------|---------|---------|---------|
| | | | 주말 | 평일 | 주말 | 평일 | |
| 일반야영장 | 1개소/1박 | 35,000 | 25,000 | 20,000 | 20,000 | 15,000 | |
| 오토캠핑장 | 1개소/1박 | 40,000 | 30,000 | 25,000 | 25,000 | 20,000 | |
| 카라반 캠핑장 | 2인용 | 1대/1박 | 120,000 | 100,000 | 80,000 | 80,000 | 60,000 |
| | 4인용 | 1대/1박 | 160,000 | 120,000 | 100,000 | 100,000 | 80,000 |
| | 6인용 | 1대/1박 | 180,000 | 140,000 | 120,000 | 120,000 | 100,000 |
|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 1대/1박 (6인) | 240,000 | 220,000 | 200,000 | 200,000 | 180,000 | |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초과시 시설사용료의 10%,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 "성수기"란 7월과 8월을 말한다.
"동절기"란 1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 폐광지역(태백시,정선군,영월군) 주민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 삼척시 교류도시 주민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성수기 제외)
-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인원은 최대 8인으로 한정하며, 추가시 1인당 1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사용료 환급 기준 (제9조 제2항 관련)

| 내 용 | 환급 기준 | | |
|-------------|---|------------------------|------------------------|
| | 기준 | 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전/예약 당일 취소 | 선납금 환급 | 선납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선납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선납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선납금의 90% 공제 후 환급 |
| | 기준 | 비수기 주중 (동절기 포함) | 비수기 주말 (동절기 포함) |
|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 환급 | 선납금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연락없이 불참 |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별지 1]

캠핑장 시설 사용권 (제7조 제3항 관련)

| | |
|---|---|
| <p>No 000 -000001</p> <p>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p> <p>•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사용자 차량번호 :</p> <p>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p> <p>20 년 월 일</p> <p>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p> | <p>No 000 -000001</p> <p>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p> <p>•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사용자 차량번호 :</p> <p>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p> <p>20 년 월 일</p> <p>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p> |
|---|---|

[별지 2]

사용자 수칙 (제12조 제3항 관련)

이곳에서의 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시면서 즐기기 위해 이용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 o 캠프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2. 시설사용료
 - o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사이트
 - o 사이트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4. 자동차
 - o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o 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o 도로이외에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프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o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o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o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물
 - o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o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o 캠핑장내 녹지와 조경시설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o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o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 o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o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o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o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성수기”란 7월, 8월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말한다. 6. ~ 9. (생략) |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7월과 8월----- -----. 6. ~ 9. (현행과 같음) |
| <신설> | 제5조(휴무)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 화요일로 한다.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
| 제5조 ~ 제15조 (생략) | 제6조 ~ 제16조 (현행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조례명 :

의견제출자 :

| 제정안 | 검토의견 | |
|-----|------|------|
|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

삼척시 공고 제2018-36호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삼척시장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삼척해상케이블카의 보다 나은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을 변경하고 이용요금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행시간 변경(안 제5조제1항제1,2호)

- 정기휴무일 변경(안 제6조)
- 이용료 중 소인기준 변경(안 제10조제5항)
- 이용료 면제대상 연령 변경(안 제11조제3호)
-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관내 주둔 군인 내용 추가(안 제12조)
- 이용료 감면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요금 변경 및 지역주민 감면혜택 평일로 제한(안 별표2)
- 매표마감 시간 신설(안 별표4)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해양관광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38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삼척시청 해양관광센터 해상케이블카
- 전 화 : 033-570-4608 / FAX : 033-570-4196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해상케이블카 (전화: 033-570-46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거장”을 “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1.5명”을 “0.5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11월”을 “9월”로, “3월”을 “5월”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4월”을 “6월”로, “10월”을 “8월”로 한다.

제6조 중 “18일로 한다. 단, 18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를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로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정거장”을 “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을 “만 3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아동”을 “영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관내 주둔 군인”을 “관내 주둔 군인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 최대 2명까지”로 한다.

제14조 중 “정거장”을 “역”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서식, 별표 제2호 서식, 별표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제10조 관련)

| 구 분 | 왕복요금 | | 편도요금 | | 비 고 |
|-----|---------|--------|--------|--------|-------|
|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
| 대인 | 10,000원 | 8,000원 | 6,000원 | 5,000원 | 1명 요금 |
| 소인 | 6,000원 | 5,000원 | 4,000원 | 3,000원 | 1명 요금 |

- ※ 1. 단체는 30명 이상을 말한다.
-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별표 2]

감 면 료(제12조 관련)

| 구 분 | 왕복요금 | 편도요금 | 비 고 | |
|-------------|--------|--------|--------|-------|
| 지역주민 | 5,000원 | 3,000원 | 1명 요금 | |
| 지역소인 | 3,000원 | 2,000원 | 1명 요금 | |
| 우 대 자 | 경로우대자 | 7,000원 | 4,000원 | 1명 요금 |
| | 장애인 | 5,000원 | 3,000원 | 1명 요금 |
| | 국가유공자 | | | |
| | 관내군인 | | | |

- ※ 1. 지역주민은 삼척시 또는 폐광지역 주민인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을 말한다.
(평일에 한함)
- 2. 지역소인은 삼척시 또는 폐광지역 주민 중 만 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평일에 한함)
- 3. 우대자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내 주둔 군인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 최대 2명까지를 말한다.
- 4. 지역주민 및 우대자는 단체요금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5. 이용요금은 해당되는 요금 구간 중 가장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4]

운영기준(제14조 관련)

1. 운행거리

운행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부터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역)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역)부터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까지 각각 874m를 운행한다.

2. 매표시간

- 가.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에 준하되, 매표마감은 운행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 나. 운행시간의 지연 등으로 마지막 삭도시설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권을 아니할 수 있다.
- 다. 일출, 일몰 시간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위탁관리시 매표시간은 시장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 및 사용

- 가. 승·하차장마다 구간에 대한 설명서,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 나. 삭도시설 운행구간과 삭도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는 매일 하여야한다.
- 다. 삭도시설 운행 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사자 확보

- 가. 삭도안전관리책임자 1명(계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
 -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10년 이상 계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삭도운전자 2명(계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2)
 -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는 자
- 다. 차장 2명

5. 종사자 교육

가. 삭도시설 종사자에게는 년 1회 이상 친절, 안전,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삭도운전·정비와 관련된 채용자는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삭도·궤도 관련 법령
- 2) 삭도시설의 구조
- 3) 삭도시설 운전요령
- 4) 비상시설 가동방법
- 5) 서비스 및 운송질서의 확립
- 6) 안전관리규정
- 7) 케이블카 운영 매뉴얼
- 8)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6. 삭도시설의 점검 및 검사

가. 삭도시설의 점검 및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검사 : 매년 실시하는 검사
- 2) 임시검사 :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 3) 일상점검 :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
- 4) 정기점검 : 3개월마다 실시

나. 점검·정비 담당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운전자는 삭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상점검 기록부에 기록하며,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며, 저해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삭도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삭도고장 발생 시 조치

- 가. 기계의 결함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 중단 시 원인을 파악하여 결함요인을 제거하고 난 후 재가동 하여야 한다.
- 나. 재가동이 지체되는 경우 운행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비상원동기를 가동하여 캐빈에 승차한 고객을 각 정거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한다.
- 다. 삭도시설의 결함으로 고객을 정거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기 바닥의 비상탈출 장치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고장 조치 완료 후 운영을 재개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고장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고객을 바로 승차시킬 수 있다.

8. 기록의 유지관리

- 가.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및 삭도시설 점검 기록대장
- 나. 징수부 및 기타 경리관계 장부·서류
- 다. 일일 승차 현황부
- 라.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명부

9. 승차 및 운행의 중지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풍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바람의 추이를 고려하여 매표 및 승차를 일시 중단하고 시설의 중지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지 못한 탑승권은 환불 조치한다.

10. 손해 및 재해보험가입

삭도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운행구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정거장)에서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정거장)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정거장)에서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정거장)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 제3조(운행구간) -----(용화역)에서 -----(장호역)까지 -----(장호역)에서 -----(용화역)까지의 -----. |
| 제4조(승차기준) ① (생략) ② (생략) 1.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1.5명 | 제4조(승차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0.--- |
| 제5조(운행시간) ① (생략) 1.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09:00 ~ 18:00 2. 4월 1일 ~ 10월 31일 09:00 ~ 20:00 | 제5조(운행시간) ① (현행과 같음) 1. 9월 ----- 5월 ----- ----- 2. 6월 --- 8월 ----- --- |
| 제6조(정기휴무) 삼척시 해상케이블카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18일로 한다. 단, 18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 제6조(정기휴무) ----- -----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로 --. -- 공휴일인 경우에는 -----. |
| 제8조(발권방법) 발권은 편도권과 왕복권으로 하며 각 정거장에서 | 제8조(발권방법) -----역----- |

| | |
|--|--|
|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 -----. |
| 제10조(이용료) ① ~ ④ (생략) ⑤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초등학교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 제10조(이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만 36개월 -----. |
| 제11조(이용료의 면제) 1. 2. (생략)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단, 보호자 1인당 아동 1인 이용료 면제 4. (생략) | 제11조(이용료의 면제) 1. 2. (현행과 같음) 3. ----- 36개월 미만의 영아. ----- -- 영아 ----- 4. (현행과 같음) |
| 제12조 ① (생략)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 노인, 관내 주둔 군인 | 제12조 ① (현행과 같음) 3. ----- ----- 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 최대 2명까지 |
|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정거장마다 별표 3의 삭도시설 안전기준과 별표 4의 삭도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 ----- 역마다 ----- ----- -----. |
| [별표 1] 이용료(제10조 관련) | [별표 1] 이용료(제10조 관련) |

| 구분 | 왕복요금 | | 편도요금 | | 비고 |
|----|-------|-------|-------|-------|------|
|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
| 대인 | 1000원 | 8000원 | 6000원 | 5000원 | 1명요금 |
| 소인 | 6000원 | 5000원 | 4000원 | 3000원 | 1명요금 |

1. (생략)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별표 2] 감면료(제12조 관련)

| 구분 | 왕복요금 | 편도요금 | 비고 |
|------|--------|--------|------|
| 지역주민 | 5,000원 | 3,000원 | 1명요금 |
| 지역소인 | 3,000원 | 2,000원 | 1명요금 |
| 우대자 | 7,000원 | 4,000원 | 1명요금 |

1. 지역주민은 삼척시 또는 폐광 지역 주민인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을 말한다.
2. 지역소인은 삼척시 또는 폐광

| 구분 | 왕복요금 | | 편도요금 | | 비고 |
|----|-------|-------|-------|-------|------|
|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
| 대인 | 1000원 | 8000원 | 6000원 | 5000원 | 1명요금 |
| 소인 | 6000원 | 5000원 | 4000원 | 3000원 | 1명요금 |

1. (현행과 같음)
2. -----, --- 만 36개월 이상 -----.

[별표 2] 감면료(제12조 관련)

| 구분 | 왕복요금 | 편도요금 | 비고 | |
|------|--------|--------|--------|------|
| 지역주민 | 5,000원 | 3,000원 | 1명요금 | |
| 지역소인 | 3,000원 | 2,000원 | 1명요금 | |
| 우대자 | 경로 우대자 | 7,000원 | 4,000원 | 1명요금 |
| | 장애인 | 5,000원 | 3,000원 | 1명요금 |
| | 국가유공자 | | | |
| | 관내 군인 | | | |

1. 지역주민은 삼척시 또는 폐광 지역 주민인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을 말한다.(평일에 한함)
2. -----

지역 주민 중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우대자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내 주둔 군인을 말한다.

4. 5. (생략)

[별표 4]

1. 운행거리

운행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정거장)부터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정거장)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정거장)부터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정거장)까지 각각 874m를 운행한다.

2. 매표시간

가.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에 준한다.

나. 운영 마감 30분 전에는 왕복 탑승권을 제한하나,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발권을 허용하며 왕복이용을 하지 못하였다라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만 36개월 이상-----

-----(평일에 한함)-----

3. -----

-----관내 주둔 군인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 최대 2명까지를-----.

4. 5. (현행과 같음)

[별표 4]

1. 운행거리

 (용화역)-----
 --- (장호역)-----
 ----- (장호역)
 ----- (용화역)-----

2. 매표시간

가. ----- 운영시간에 준하되, 매표 마감은 운행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나. (삭제)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 제 정 안 | 검 토 의 견 | |
|-------|---------|------|
|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